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토보고서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남 범 우

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임영은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0년 11월 20일

○ 회부일자 : 2020년 11월 23일

3. 제안이유

○ 국가 차원의 국가등록문화재와 함께 시·도에서 시·도 등록문화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「문화재보호법」이 개정(법률 제16057호, 2018.12.24. 공포, 2019.12.25. 시행)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.

4. 주요내용

○ 충청북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자료에 도등록문화재 추가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19조, 제26조, 제27조, 제28조, 제29조, 제30조, 제33조, 제34조, 제35조, 제40조, 제45조, 제46조, 제47조, 제54조, 제55조, 제57조, 제58조, 제61조, 제62조, 제63조)

5. 검토의견

○ 이 개정조례안은 「문화재보호법」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

- 문화재보호법 제70조제3항에서
  - “시·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문화재로서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지 아니한 유형문화재, 기념물(제2조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은 제외한다) 및 민속문화재 중에서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을 시·도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다.”는 법률 개정함에 따라,
- 이와 관련된 조례(안 제1조, 제2조, 제4조, 제19조, 제26조, 제27조, 제28조, 제29조, 제30조, 제33조, 제34조, 제35조, 제40조, 제45조, 제46조, 제47조, 제54조, 제55조, 제57조, 제58조, 제61조, 제62조, 제63조)에 도등록문화재 내용을 추가 하는 것임.

○ 이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개정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, 지역의 보호가치가 있는 근대 시설 및 기념물 등 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붙 임: 충청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끝.